

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장태용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216
----------	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2년 08월 30일

발 의 자: 장태용, 고광민, 김규남,
김길영, 김동욱, 김형재,
김혜지, 박상혁, 서상열,
송경택, 신복자, 윤기섭,
이봉준, 이상욱, 정지웅,
채수지, 최민규, 최호정,
허·훈, 황유정 의원(20명)

1. 제안이유

- 현재 서울시 출자·출연 기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시 ‘시장 및 출자·출연 기관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’, ‘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’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음
- 시장과 출자·출연 기관 이사회 추천인원의 불확정 규정으로 인해, 시와 출자·출연 기관 간에 법적 근거가 없는 추천인원 배정을 위한 협의의무가 부여되고, 협의과정에서 출자·출연 기관 운영의 자율성이 침해 될 수 있음
- 한편 임원추천위원회가 6명으로 구성되어있어 가부동수로 위원회 의견이 대립되는 경우 의결을 통한 의사결정이 곤란할 수 있음
- 또한, ‘시장 및 출자·출연 기관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’, ‘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’으로 구성하는 것은 시의회가 50%의 비율이 되어 행정에 대해 소극적 사후적으로 시의회가 통제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의 취지를 넘어선 개입이 될 가능성이 있음
- 따라서 시장 및 기관 이사회의 추천인원을 명확하게 규정하여, 출자·출연 기관 운영의 자율성 및 책임경영을 제고하고,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임원추천위원회는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, 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, 그 출자·출연 기관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으로 구성함(안 제8조제1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
및 같은 법 시행령

나. 예산조치 : 비대상사유서 별첨

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제7조제3항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. 다만, 출자·출연 기관을 설립하는 때에는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4명과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으로 구성한다.

1.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
2. 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
3. 그 출자·출연 기관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8조(임원추천위원회) ① 제7조제3항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. <신설></p> <p>1. 시장 및 출자·출연 기관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</p> <p>2. 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 <신설></p> <p>② ~ ⑦ (생략)</p>	<p>제8조(임원추천위원회) ① 제7조제3항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. <u>다만, 출자·출연 기관을 설립하는 때에는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4명과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으로 구성한다.</u></p> <p>1.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</p> <p>2. 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</p> <p>3. <u>그 출자·출연 기관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</u></p> <p>② ~ ⑦ (현행과 같음)</p>